

미성년후견인 선임 신청에 대한 심리 통지서에는 이 양식의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다양한 경우에 부모가 다른 보호자에게 자녀의 보호, 양육권, 통제권을 넘기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서는 소년법원과 미성년후견 사건을 비교합니다. 소년법원에서 양부모(양육 가정이라고도 함)는 임시 보호자입니다. 후견인은 “영구” 보호자입니다. 유언공증법원에서도 다양한 절차와 기준을 사용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의 세 가지 도표에는 소년법원 및 미성년후견 사건의 권리와 의무,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및 지원, 법원 절차의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의 미성년후견에 대한 정보(양식 GC-205-INFO)를 참조하십시오. 재산의 미성년후견에 대한 정보는 재산의 미성년후견에 대한 정보(양식 GC-206-INFO)를 참조하십시오. 소년법원 후견에 대한 정보는 소년법원 후견에 대한 정보(양식 JV-350-INFO)를 참조하십시오.

## 이 양식의 도표

- 1. 다양한 유형의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2~4페이지)**  
양부모/양육 가정, 미성년후견인, 소년법원 후견인을 비교합니다
- 2. 다양한 유형의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재정 지원(5~8페이지)**  
양부모/양육 가정, 미성년후견인, 소년법원 후견인을 비교합니다
- 3. 후견인 선임 방법 및 그 후 이루어지는 일(9~11페이지)**  
미성년후견인과 소년법원 후견인을 비교합니다

**주의:** 이 양식은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부모, 잠재적 보호자, 잠재적 후견인은 특정한 상황에 관련된 질문 또는 우려 사항에 대해 답변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 링크 [www.courts.ca.gov/selfhelp-findlawyer.htm](http://www.courts.ca.gov/selfhelp-findlawyer.htm)를 클릭하면 변호사를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언공증법원 또는 소년법원에서 소송 사건 시작하기

미성년후견 사건은 개인이 후견인 선임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작됩니다. 청소년 부양 사건은 아동복지기관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시작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아동복지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기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개인은 소년법원에 아동복지기관에 신청서 제출을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기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아동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년법원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후견 소송이 시작된 후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에 청소년 부양 소송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유언공증법원에서는 아동복지기관에 부양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기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년법원에 기관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은 법원에 가지 않고 아동을 위한 돌봄과 거처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일반적으로 일시적이며 보호자 승인 선서진술서([www.courts.ca.gov/documents/caregiver.pdf](http://www.courts.ca.gov/documents/caregiver.pdf) 참조) 또는 아동복지기관과의 자발적 배정 합의서([www.cdss.ca.gov/cdssweb/entres/forms/english/soc155.pdf](http://www.cdss.ca.gov/cdssweb/entres/forms/english/soc155.pdf) 참조)와 같은 문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미성년후견에 대한 정보(양식 GC-205-INFO)에서 이러한 준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부모/양육 가정

아동이 가정에서 계속 안전하게 생활할 수 없다고 소년법원에서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아동을 가정에서 벗어나 카운티 아동복지기관(아동 보호 서비스 또는 CPS라고도 함)의 보호 및 양육을 받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에서는 승인된 양부모의 가정에 아동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가 양육 가정 승인(RFA) 절차를 거쳐 승인된 경우, 양부모를 양육 가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므로 이 양식에서는 “양부모/양육 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양부모/양육 가정으로 승인받는 것은 어렵고 시간이 걸립니다. 일부 가정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후견인

후견인은 아동의 부모가 없거나 아동을 돌볼 수 없을 때 아동의 장기적인 보호, 양육, 통제를 위해 유언공증법원이나 소년법원에서 선임한 성인입니다. 법원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친인척 또는 비친인척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후견인은 소년법원 후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미성년후견인의 재정적 지원, 서비스,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은 소년법원 후견인과 다르며 대개 더 적습니다.

## 1. 다양한 유형의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양부모/양육 가정	후견인 (유언공증법원 및 소년법원)
<b>보호자의 기본 책임 및 일반 의무</b>	
<p>양부모/양육 가정은 아동복지기관 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 아동을 돌보고, 감독하며, 거처를 제공합니다.</p> <p>양부모/양육 가정은 음식, 의복 등 아동의 필요 사항을 위한 위탁 양육 지원금을 받으며, 아동에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 아동이 이용 가능한 자원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p>	<p>후견인은 유언공증법원에서 임명하든 소년법원에서 임명하든 상관없이 아동에 대해 부모와 동일한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 후견인은 아동을 돌보고, 양육하고, 통제합니다. 그러나 후견인을 선임하는 법원은 후견인에게 특정 사항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p> <p>후견인은 아동의 의식주, 교육, 모든 의료 및 치과 치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p> <p>후견인은 아동의 안전, 보호, 신체적, 정서적 성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후견인도 부모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학교 및 주치의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해야 합니다.</p> <p>아동에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후견인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적절한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일부 아동은 신체적 또는 학습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대 가정에 있었거나 학대의 피해자인 아동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을 도우려면 상담 및 기타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p>
<b>양육권 및 방문</b>	
<p>법원에서 특정한 배정을 명령하지 않는 한 아동의 물리적 양육권, 즉 아동의 거처를 결정할 권리는 아동복지기관에 있습니다.</p> <p>부모는 법원이 정한 제한에 따라 법적으로 양육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p> <p>양부모/양육 가정은 사회복지사가 승인하거나 법원이 명령한 부모 및 다른 사람들과의 방문 및 전화 통화에 아동이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p> <p>양부모/양육 가정은 스스로 법원에 친권을 종료하고 아동을 입양하게 해달라고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에게 아동을 입양하고 싶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p>	<p>후견인은 아동에 대한 법적 및 물리적 양육권을 갖습니다.</p> <p>후견인이 있는 동안 부모는 더 이상 자녀를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후견권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부모의 권리는 완전히 정지되지만, 종료되지는 않습니다.</p> <p>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부모나 다른 사람은 법원에 아동을 방문하거나 아동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후견인이 허용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원의 경우, 법원은 아동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부모가 아동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 후견인이 아동을 방문할 사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p> <p>후견인은 상황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3년까지 아동을 양육한 후, 친권 종료 및 아동 입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p>
<b>거주지</b>	
<p>사회복지사와 법원은 아동이 누구와 함께 살지 결정합니다.</p>	<p>후견인이 아동의 거주지를 결정합니다. 아동은 일반적으로 후견인과 함께 살지만,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 후견인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p> <p>아동이나 후견인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 후견인은 법원 및 다른 사람에게 적절하게 통지해야 합니다.</p> <p>후견인은 아동의 거주지를 캘리포니아주를 벗어나는 지역으로 변경하려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p>

양부모/양육 가정	후견인 (유언공증법원 및 소년법원)
<b>의료</b>	
<p>사회복지사가 아동의 의료, 치과, 정신 건강을 위한 진료 및 치료를 주선하지만, 양부모/양육 가정이 이러한 진료를 예약하고 아동을 데려갈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부모는 응급 상황이나 법원의 별도 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의 의료 관련 결정을 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p>	<p>후견인은 아동의 의료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후견인은 아동의 의학적 치료에 동의할 권한이 있습니다. 단, 아동이 14세 이상인 경우 (1) 아동과 후견인이 모두 동의하거나, (2) 법원 명령에서 수술을 특별히 승인하거나, (3) 응급 상황인 경우가 아니면 아동에게 수술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p> <p>후견인은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을 정신 건강 치료 시설에 입소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입소에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후견인은 아동이 필요로 하는 상담이나 기타 필요한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p> <p>또한 관련 법률에서는 외래 정신건강 치료, 임신 또는 성병 관련 치료, 약물 또는 알코올 치료 등 특정 유형의 치료에 대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아동이 동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p>
<b>교육</b>	
<p>아동이 위탁 양육을 받고 있는 경우, 법원에서 아동의 교육 및 발달 서비스 결정을 내릴 권리를 제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지 않는 한, 부모가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p> <p>교육 및 발달 서비스 결정을 내릴 부모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권리를 양부모/양육 가정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양부모/양육 가정은 교육권을 가진 사람이 초대하지 않는 한 해당 결정을 내리거나 아동을 위한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p> <p>양부모/양육 가정은 아동이 학교에 출석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동이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양부모/양육 가정은 학군 및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아동이 아동의 IEP에 명시된 모든 서비스와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특수 요구 사항이 있는 아동을 위한 재정 지원 관련 정보는 8페이지 참조.)</p>	<p>법원에서 아동의 교육 및 발달 서비스 결정권을 갖도록 다른 사람을 선임하지 않는 한, 후견인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해당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후견인은 해당 학군에 아동을 위탁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수 요구 사항이 있는 아동을 위한 재정 지원 관련 정보는 8페이지 참조.)</p>

양부모/양육 가정	후견인 (유언공증법원 및 소년법원)
<b>아동의 신분 변경에 대한 동의</b>	
<p>양부모/양육 가정은 아동의 결혼, 군 입대, 운전면허증 신청에 동의할 수 없지만, 소년법원은 이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p>	<p>후견인과 <b>법원</b>은 미성년 아동의 결혼을 허가해야 합니다.</p> <p>후견인은 미성년 아동의 군 입대 또는 운전면허증 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p> <p>후견인은 미성년 아동의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p>
<b>재정적 의무</b>	
<p>양부모/양육 가정은 아동의 필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위탁 양육 지원금을 받습니다.</p>	<p>부모가 여전히 아동을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후견인은 아동의 일상 재정 지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후견인은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지역 아동양육기관에 연락하여 부모로부터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아동은 또한 부양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위탁 양육 (AFDC-FC), 사회 보장 혜택, 재향군인청 혜택, 인디언 아동 복지 혜택, 기타 공공 또는 민간 출처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표 2 참조.)</p>
<b>법적 책임</b>	
<p>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 양부모/양육 가정은 아동 또는 비미성년 부양가족이 양부모/양육 가정의 가정에 배정돼 있는 동안 아동 또는 비미성년 부양가족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사망이나 인명 손실이나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민사 소송에서 면책됩니다. (복지 및 기관법 362.06(b)(2)항 참조.)</p>	<p>후견인은 부모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민법 §1714.1(a) 참조.) 후견인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는 일반적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화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서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p>
<b>아동의 행동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이 우려되는 경우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b>	
<b>기타 권리 또는 의무</b>	
<p>양부모/양육 가정은 법정 검토 심리 및 영구 심리에 대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심리에 참석하여 아동에 대한 정보를 법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하려는 보호자는 <b>보호자 정보 양식(양식 JV-290)</b>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p> <p>양부모/양육 가정은 아동의 아동 및 가족 팀 (CFT)에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CFT 회의에 대해 통지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상담 또는 기타 유형의 치료와 같은 아동의 서비스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도록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p>	<p>법원은 후견인에게 육아 수업 이수 또는 아동과의 상담 세션 참석 등 다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모든 법원 명령을 따라야 하고 법원 조사관에게 협조해야 합니다.</p> <p><b>법원 방문자 및 상태 보고서:</b> 일부 카운티에는 “법원 방문자”가 후견 상황을 추적하고 검토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당 카운티에 이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후견인은 법원 방문자의 모든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후견인은 상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p>

2. 다양한 유형의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재정 지원

아래 설명된 지원금은 생활비를 기준으로 매년 업데이트됩니다.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보호자에게 배정된 아동은 2월에 1월 한 달에 대한 지원금을 받습니다.

아래 지원금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업데이트된 금액은

[www.cdss.ca.gov/inforesources/letters-regulations/letters-and-notice/all-county-letters](http://www.cdss.ca.gov/inforesources/letters-regulations/letters-and-notice/all-county-letters)를 참조하십시오.

양부모/양육 가정	미성년후견인	소년법원 후견인
<b>아동—친인척당 현금 지원금</b>		
<p>친인척이 양부모/양육 가정으로 승인되기 전에는 아동이 친인척에게 배정된 날부터 시작하여 위탁 양육 기본 금액에 따라 <b>긴급 보호자(EC)</b>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C 지원금은 위탁 양육 기본 금액인 월 \$1,129로 제한됩니다.</p> <p>승인 후 양부모/양육 가정은 연방의 <b>부양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위탁 양육(AFDC-FC)</b>을 통해 위탁 양육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 지원금은 위탁 양육 기본 금액인 월 \$1,129로 책정됩니다.</p> <p>연방 및 주 AFDC-FC의 경우, 자격 요건이 각기 다릅니다. 아동복지기관에서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방 AFDC-FC 또는 EC를 받을 자격이 없는 친인척 위탁 양육 아동의 경우 <b>승인된 친인척 보호자(ARC)</b>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위탁 양육 기본 금액인 월 \$1,129로 책정됩니다.</p> <p>다른 주에 거주하는 친인척에게 배정된 캘리포니아주 위탁 청소년은 배정된 주의 위탁 양육 금액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친인척 후견인과 함께 사는 아동에게는 아동 전용 <b>캘리포니아주 근로 기회 및 아동에 대한 책임 프로그램(CalWORKs)</b>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가정에서 받는 현금 지원금을 계산할 때는 해당 가정의 소득을 고려합니다.</p> <p>지급액은 비친인척에게 지급하는 위탁 양육 기본 금액의 약 1/2입니다. 아동이 친인척과 함께 사는 경우 친인척 보호자는 후견인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 지급액은 위탁 양육 기본 금액의 1/2 미만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p> <p>CalWORKs 최대 지원금(MAP) 수준은 지역, 면제/비면제 상태 등의 변수에 따라 달라지며,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아동 한 명에 대한 MAP 금액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월 \$669에서 \$779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금 지원에 대한 MAP 수준에 대해 문의할 경우에는 혜택 전담 사회복지사가 가장 적임자입니다.</p> <p>아동이 18세가 되면 지급이 종료되지만,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지급이 19세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p>	<p><b>친인척 후견 지원금(Kin-GAP)</b> 지급은 승인된 친인척 후견인과 6개월 이상 같이 산 아동에게 제공됩니다. Kin-GAP 신청 가정은 카운티와 서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소년법원에서 부양 사건이 종결되면 Kin-GAP 지급이 시작됩니다.</p> <p>지급액은 아동이 위탁 양육에서 받고 있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지만, 지급액에는 위탁 양육 기본 금액과 아동이 받고 있던 모든 특별 필요 사항 보조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부모, 친인척 후견인, 해당 가구에 거주하는 기타 친인척의 소득은 아동의 친인척 후견인 자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지 <b>않습니다</b>.</p> <p>Kin-GAP 지급은 일반적으로 아동이 18세가 되면 종료되지만,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19세까지, 아동이 16세가 된 후 Kin-GAP 지급이 시작되었거나 아동에게 지속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21세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p> <p>법원에서 친인척 후견인을 선임한 후에도 청소년 사건을 종결하지 않는 경우, 후견인은 Kin-GAP 대신 <b>승인된 친인척 보호자(ARC)</b> 또는 위탁 양육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아주 드문 상황에서, 친인척 후견인은 Kin-GAP, 위탁 양육, ARC 지원금 등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b>캘리포니아주 근로 기회 및 아동에 대한 책임 프로그램(CalWORKs)</b>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p>

양부모/양육 가정	미성년후견인	소년법원 후견인
<b>아동-비친인척당 현금 지원금</b>		
<p>양육 가정으로 승인되기 전에 비친인척 양부모/양육 가정은 아동이 비친인척 가정에 배정된 날부터 시작하여 위탁 양육 기본 금액인 월 \$1,129의 <b>긴급 보호자 (EC)</b>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승인 후 양부모/양육 가정은 위탁 양육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비친인척 양육 가정은 <b>부양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위탁 양육(AFDC-FC)</b> 지원금을 받습니다. 연방 및 주 AFDC-FC 지원금 프로그램이 있으며 자격 요건은 각기 다릅니다. 위탁 양육 기본 금액은 월 \$1,129입니다.</p>	<p>후견인이 지정되고 아동이 후견인과 함께 살기 시작할 때까지는 현금 지급이 제공되지 않습니다.</p> <p><b>비친인척 미성년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는 적격 아동은 법원에서 임시 후견을 설정한 후 위탁 양육 기본 금액인 월 \$1,129에 해당하는 주정부의 부양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위탁 양육(AFDC-FC)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b></p> <p>지급은 일반적으로 아동이 18세가 되면 종료되지만,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19세까지, 아동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21세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p>	<p>주정부의 <b>부양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위탁 양육(AFDC-FC)</b>은 비친인척 후견인과 함께 사는 아동에게 제공됩니다. 이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사하기 전에 금액이 변경되는지 문의하십시오. 위탁 양육 기본 금액은 월 \$1,129입니다.</p> <p>18세가 된 후에도 이전의 비친인척 후견인과 계속 같이 사는 청소년은 직장, 학교, 고용 장벽 제거를 위해 마련된 활동 등과 관련된 특정 참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1세가 될 때까지 AFDC-FC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p>
<b>의료 보험</b>		
<p>위에 설명한 현금 수급 자격이 있는 아동은 전체 범위의 <b>Medi-Cal</b>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26세까지 <b>이전 위탁 청소년 Medi-Cal</b>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CalWORKs(친인척 후견인) 또는 AFDC-FC(비친인척 후견인) 수급 자격이 있는 아동은 <b>Medi-Cal</b>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8세가 된 청소년은 <b>이전 위탁 청소년 Medi-Cal</b>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b>없지만</b>, 소득에 따라 Medi-Cal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Kin-GAP이나 ARC나 CalWORKs 수급 자격이 있는 아동은 전체 범위의 <b>Medi-Cal</b>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p>
<b>연장 위탁 양육 및 기타 전환 연령 지원</b>		
<p><b>연장 위탁 양육</b> 혜택은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18세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미성년 부양 가족은 21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사례 관리 및 EFC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과도기적 거처 및 자립 생활 배정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p>	<p>미성년후견을 받으면서 18세가 되는 청소년은 <b>연장 위탁 양육이나 자립 생활 프로그램</b> 서비스나 <b>Chafee 교육 훈련 바우처</b>를 받을 자격이 <b>없습니다</b>.</p>	<p>소년법원 후견을 받고 있는 청소년이 18세가 되면 <b>연장 위탁 양육</b> 혜택이 제공되지 <b>않습니다</b>. 그러나 전 후견인이 사망하거나 더 이상 청소년에게 지속해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청소년은 소년법원에 부양 사건을 다시 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할 경우, 해당 청소년이 요건을 충족하면 EFC 지원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p>

양부모/양육 가정	미성년후견인	소년법원 후견인
<b>연장 위탁 양육 및 기타 전환 연령 지원</b>		
<p>지원금 금액은 생활 준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금 금액은 위탁 양육 기본 금액 월 \$1,129 부터 고비용 카운티의 과도기 거처에 거주하는 양육 청소년의 경우 월 \$5,720까지 다양합니다.</p> <p><b>자립 생활 프로그램</b> 지원금은 16세 이후에 위탁 양육을 받았던 현재 및 이전 위탁 청소년일 경우 21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청소년은 이 지원금으로 가계 및 돈 관리법을 배우고 교육, 주거,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고등 교육을 위한 <b>Chafee 교육 훈련 바우처</b>는 16세 이후에 위탁 양육을 받았던 청소년에게 제공됩니다. 이 바우처는 연간 최대 \$5,000의 가치가 있습니다.</p>	<p>그러나 이전 후견인과 함께 살면서 CalWORK(친인척) 또는 AFDC-FC(비친인척) 지원금을 받는 청소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기타 적격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19세까지, 장애가 있는 경우 21세까지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p>	<p><b>자립 생활 프로그램</b> 지원금은 16세 이후에 위탁 양육을 받았거나, 16세 이후에 Kin-GAP 후견을 받았거나, 8세 이후에 소년법원을 통해 비친인척 법정 후견을 받은 경우 현재 및 이전 위탁 청소년이 21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청소년은 이 지원금으로 가계 및 돈 관리법을 배우고 교육, 주거,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b>Chafee 교육 훈련 바우처</b>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부모/양육 가정 열을 참조하십시오.</p>
<b>보육 지원</b>		
<p><b>긴급 보육 브리지</b> 프로그램은 위탁 양육 아동의 보호자와 자신의 자녀가 있는 위탁 청소년에게 보육 바우처와 탐색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격은 가용한 예산과 카운티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p>	<p>소득 기반 보육 지원은 미성년후견을 받는 아동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p>	<p><b>후견인이 배정된 후에는 긴급 보육 브리지 프로그램</b> 혜택은 제공되지 않지만, 소득 기반 보육 지원은 제공될 수 있습니다.</p>
<p>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격을 갖춘 가정에 다양한 공적 자금 지원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b>개인의 미성년후견에 대한 정보(양식 GC-205-INFO) 및 소년법원 후견에 대한 정보(양식 JV-350-INFO)</b>에서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보육 자원 및 소개 기관에서는 가정에서 보육 시설을 찾고 공적 자금 지원 보육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모와 후견인은 여기에서 지역 자원 및 소개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a href="https://rrnetwork.org/family-services/find-child-care">https://rrnetwork.org/family-services/find-child-care</a>.</p>		

양부모/양육 가정	미성년후견인	소년법원 후견인
<b>특별 필요 사항 추가 지원금</b>		
<p>특별 필요 사항 추가 지원금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지원금은 기본 금액에 추가되며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p> <p>아동에게 제공되는 신체, 행동, 정서, 교육, 건강, 영구 보호에 기반한 <b>보호 수준</b>. 지급액은 월 \$1,129~\$1,510입니다.</p> <p>의료, 행동, 발달, 정서 측면에서 집중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b>집중 서비스 위탁 양육</b>. 지급액은 월 \$2,946입니다.</p> <p>의료, 행동, 발달, 정서 측면에서 특수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b>전문 치료 증액</b>. 이 지급액은 카운티에서 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 href="http://www.cdss.ca.gov/inforesources/foster-care/specialized-care">www.cdss.ca.gov/inforesources/foster-care/specialized-care</a>를 참조하거나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십시오.</p> <p>위탁 양육을 받으면서 지역 센터의 서비스도 받을 자격이 있는 아동을 위한 <b>이중 기관 금액</b>. 이 금액은 3세 이하 아동의 경우 월 \$1,323, 3세 초과 아동의 경우 월 \$2,955입니다.</p> <p>자신의 비부양 자녀와 함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b>전가족 위탁 가정 및 영유아 보조 지원금</b>이 가능합니다. 금액은 월 \$900입니다.</p> <p>임신 마지막 3개월 동안 위탁 양육 중인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b>임산부 지원금</b>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지급액은 \$2,700입니다.</p> <p>일부 카운티에서는 위탁 아동에게 <b>의류 수당</b>을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카운티마다 다릅니다.</p> <p><b>교육 여행 환급</b>은 아동의 출신 학교(양육 가정에 배정되기 전에 아동이 다니던 학교)로 아동을 수송하는 보호자에게 제공됩니다. 이 금액은 양부모/양육 가정과 학교 간 하루 왕복 2회를 기준으로 주 정부에서 정합니다.</p>	<p>친인척 미성년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특별 필요 사항 추가 지원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p> <p>비친인척 미성년후견인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며 주 정부의 AFDC-FC 지원금을 받는 아동은 자격이 되는 경우 <b>전문 치료 증액</b>이나 <b>의류 수당</b>이나 <b>전가족 위탁 가정</b> 지원금의 청소년 부모 부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p> <p>이들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부모/양육 가정 열을 참조하십시오.</p>	<p>특별 필요 사항 추가 지원금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 수준</li> <li>• 집중 서비스 위탁 양육</li> <li>• 전문 치료 증액</li> <li>• 이중 기관 금액</li> <li>• 전가족 위탁 가정 및 영유아 보조 지원금</li> <li>• 의류 수당</li> </ul> <p>이들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부모/양육 가정 열을 참조하십시오.</p>



## 3. 후견인 선임 방법 및 그 후 이루어지는 일

단계	미성년후견인	소년법원 후견인
신청	아동의 후견인으로 선임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유언공증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의 부모 또는 12세 이상의 아동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미성년후견에 대한 정보(양식 GC-205-INFO) 참조.)	소년법원 소송 사건을 시작하려면 카운티 사회복지사 또는 검사가 소년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안된 후견인이 친인척인 경우 법원 조사관이 조사를 실시합니다. 제안된 후견인이 친인척이 아닌 경우, 카운티 사회복지사가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신청의 승인 여부를 권고하면서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 보고서는 소송 과정에서 송달받은 모든 당사자와 해당 변호사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조사 비용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와 후견인 후보자는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또는 보호감찰관은 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을 일시적으로 부모의 집 밖에서 체류하게 할지 여부와 법원에 아동을 부모의 집에서 퇴거시킬 것을 권고할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결정합니다. 소년법원에서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려는 사람은 사건 초기에 아동의 사회복지사 또는 보호감찰관에게 연락하여 아동이 자신과 함께 살 수 있는지 문의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유언공증법원은 아동을 대변할 변호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습니다. 법원은 인디언 아동의 인디언 양육자 또는 친부모를 위한 변호사도 선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를 위한 변호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습니다.	부양 사건에서 소년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동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아동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건에서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부모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청소년 사법 사건에서 아동이 변호사 없이 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아동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법원은 특정 상황에서 부모를 위해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	법원은 후견인 선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리 기일을 엽니다. 부모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심리에 참석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아동의 후견인 선임 또는 신청서에서 후견인으로 제안된 사람의 선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후견인 선임이 필요하고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심리 기일을 열어 신청이 사실인지 여부와 아동을 부모의 집에서 퇴거하도록 명령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동이 부모의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법원은 부모와 아동이 동의하지 않는 한 후견인을 즉시 선임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원은 아동을 양부모/양육 가정에 우선 배정하고 사회복지사 또는 보호감찰관에게 재결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령합니다(아래 참조).
재결합 서비스	유언공증법원은 가족 재결합 서비스를 명령할 수 없지만, 필요한 경우 보호자와 아동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원은 영구 계획(예: 후견)을 선택하기 전에는 부모와 아동의 재결합(안전한 동거)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명령할 수 있지만, 선택한 이후에는 명령할 수 없습니다.

단계	미성년후견인	소년법원 후견인
<b>후견인 선임 결정</b>	<p>후견인 선임이 필요하고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언공증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p>	<p>소년법원은 필요한 결정을 내린 후 사건 진행 중 다른 시기에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부양 사건에서 법원이 신청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부모와 아동이 동의하고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하면, 처분 심리에서 아동을 위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소년 사법 사건에서 보호감찰관이 추천하거나 아동의 변호사가 요청하는 경우, 법원은 처분 심리 후 언제라도 아동을 위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부양 사건이나 청소년 사법 사건에서 법원이 가정 외 체류를 명령하고 재결합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종료한 경우, 법원은 별도의 심리를 통해 후견인을 아동의 영구 계획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할지 결정합니다. 거의 항상 해당 아동을 돌보던 사람이 선임됩니다.</p> <p>후견인 선임 절차는 일반적으로 부양 사건 및 소년 사법 사건에서와 동일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소년법원 후견에 대한 정보(양식 JV-350-INFO)</b>를 참조하고 사회복지사 또는 보호감찰관에게 문의하십시오.</p>
<b>법원 감독</b>	<p>후견인이 선임된 후에는 유언공증법원에 후견인의 행동을 규제하고 통제할 권한이 있지만, 정기적인 법원 심리는 없습니다. 법원은 후견인에게 부모 또는 다른 사람이 아동을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p> <p>법원은 후견인에게 연간 상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카운티에 따라 법원은 심리 기일을 열 수 있습니다. (<b>개인의 미성년후견에 대한 정보(양식 GC-205-INFO)</b> 참조.)</p> <p>법원은 요청을 받으면 후견인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후견인에게 출석하여 자신이 취한 조치를 설명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으며, 법원은 해당 조치를 승인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p>	<p>소년법원은 후견에 대한 관할권을 유지합니다. 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할 때 부모의 방문이 아동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부모 방문 명령도 내려야 합니다.</p> <p>후견권이 부여된 후 많은 경우, 특히 후견인이 아동과 친인척 관계일 때 법원은 부양 또는 청소년 사법 관할권을 종료하고 더 이상 예정된 법원 심리 기일을 정기적으로 열지 않습니다. 그 외의 경우, 법원은 후견권을 부여하고 부양 또는 청소년 사법 관할권을 유지하며 정기 검토 심리 기일을 계속 진행합니다. 청소년 관할권이 종료된 후에도 소년법원은 후견에 대한 관할권을 유지하며 후견인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p> <p>방문 명령을 포함한 법원 명령을 변경하거나 후견권을 종료해달라는 요청은 <b>법원 명령 변경 요청서(양식 JV-180)</b>를 사용하여 소년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p>

단계	미성년후견인	소년법원 후견인
<b>사회복지사 또는 보호감찰관의 역할</b>	<p>제안된 후견인이 아동과 친인척이 아닌 경우 카운티 사회복지사는 제안된 후견인을 심사하고 후견인 조사를 실시할 책임이 있습니다.</p> <p>유언공증법원은 후견 신청 대상인 아동이 학대받거나 방임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후견인 선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사회복지사에게 조사를 실시하고 소년법원에 부양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부양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년법원은 아동의 양육권 및 배정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유언공증법원 소송 사건은 소년법원 소송 사건이 끝날 때까지 보류됩니다.</p> <p>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에는 아동 또는 후견인이 공공 재정 지원 또는 서비스를 받지 않는 한 사회복지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p>	<p>후견권이 부여된 후에도 부양 또는 청소년 사법 사건이 계속 열려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 또는 보호감찰관은 후견인과 아동을 지원하고 예정된 소년법원 심리 기일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합니다.</p> <p>후견권이 부여된 후 청소년 부양 또는 청소년 사법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소년법원은 후견권을 계속 감독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 또는 보호감찰관의 지속적인 개입은 아동이 계속 받는 서비스 및 재정 지원에 따라 달라집니다.</p>
<b>후견 종료</b>	<p>후견은 아동이 18세가 되거나 18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법원 명령에 따라 후견 해제되거나, 결혼하거나 군에 입대하거나 입양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끝납니다).</p> <p>후견인, 부모, 아동, 인디언 양육자 또는 아동의 가족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법원은 아동이 18세가 되기 전에 후견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후견인과 함께 산 기간이 길수록 후견 종료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더 어렵습니다.</p> <p>아동이 동의하는 경우, 법원은 아동의 21세 생일까지 후견권을 연장하여 아동이 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을 얻기 위한 연방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p>	<p>후견은 아동이 18세가 되거나 18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법원 명령에 따라 후견 해제되거나, 결혼하거나 군에 입대하거나 입양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p> <p>법원은 입양과 같은 또 다른 영구 계획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후견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또는 보호감찰관, 후견인, 부모, 아동, 인디언 양육자 또는 아동의 가족은 소년법원에 후견 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p>
<b>친권 종료</b>	<p>미성년후견인 선임은 친권을 일시 정지시키지만, 종료시키지는 않습니다.</p> <p>그러나 유언검증법에 따라 아동이 후견인과 2년 이상 동거한 경우, 후견인은 자신이 아동을 입양할 수 있도록 친권 종료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에 명시된 일부 상황에서는 후견인이 단지 6개월이 경과한 후 입양을 요청하거나 최대 3년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p> <p>해당 아동이 인디언 아동인 경우 인디언 아동복지법에 따라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다.</p>	<p>소년법원 후견인 선임은 친권을 일시 정지시키지만, 종료시키지는 않습니다.</p> <p>사회복지사 또는 보호감찰관, 후견인, 아동은 친권을 종료하고 영구 계획을 입양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서를 소년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 기일을 열어 해당 요청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각 부모는 심리 기일 통지를 받고, 참여하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p> <p>해당 아동이 인디언 아동인 경우 인디언 아동복지법에 따라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다.</p>